

인천지방법원 2024. 6. 26 선고 2023가단14567 판결 [건물명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5. 29.

판 결 선 고 2024. 6. 26.

주 문

-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9, 13, 17, 16, 15, 11, 6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㉠ 부분 64.095㎡를 인도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○ 원고는 2019. 6. 13. 주문 기재 부동산 부분(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)에 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보증금 8,000만 원, 임대차기간 2019. 8. 2.부터 2021. 8. 1.까지, 입주자 피고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(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고, 피고는 보증금 중 400만 원을 부담하였다. 피고는 2019. 8. 2.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이다.

○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한 차례 갱신되어 기간이 2023. 8. 1.까지 연장되었다.○ 원고는 2023. 5. 4.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담긴 임대차계약해지통보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2023. 5. 8. 도달되었다.

[인정근거]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3. 8. 1.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,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는 이사비용 2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나, 원고가 이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근거가 없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.

판사 남기용

별지